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1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곽향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신복자, 이성배, 임춘대,  
장태용, 황유정, 황철규  
의원(21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 시, 출석요구 대상자가 장애 등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있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요구 내용의 인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출석요구 대상자의 장애 여부 등 여건에 맞추어 출석요구서의 작성·발송 및 전달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그밖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에 권고한 ‘17개 광역시·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5.5.)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의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 함(별표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300만원 이상”을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 기준 (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횟수	과 태 료
1. 서류 미제출	가. 미제출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미제출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2. 출석요구 불응	가. 불응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불응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3. 선 서 거 부	가. 거부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거부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4. 증 언 거 부	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나. 일부거부 2회 이상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다. 전체거부 1회	2백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라.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③ (생략)</p> <p>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u>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9조(과태료부과) ① ----- ----- ----- ----- ----- ----- ----- <u>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3항	△	[기술적 추계 곤란]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편의제공에 대한 방법, 범위 등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제9조(과태료부과)제1항	×	[재정소요 요인 없음]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거부, 증언거부와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3항에 따라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경우 다양한 작성·전달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용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편의'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향후 소관부서(시의회사무처 의사과)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비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참고]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한 유사 사례 (경찰청 음성변환 바코드 활용)

- 경찰청은 2023년부터 시각장애인 및 비문해자를 위한 수사서류 \*음성 전환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서비스 제공 업체(보이스아이) 문의 결과 개인용 한글문서(hwp) 문자-음성 변환 바코드 지원 소프트웨어는 약 333,000원에 구매 가능하나, 기업용 솔루션은 개별 견적으로 비용 추정
  - ※ 음성 전환 서비스(Text to Speech) :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QR 또는 바코드를 문서상 생성하고, 문서 수신자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전달받는 서비스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